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박 영 수

편 집: 문화공보관 박 중 우

전화 75-7834

인 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808 호

1980.11.12

시 보

차 레

기획과장	기획과장	기획과장	기획과장

◎ 조 려

제 1468 호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3

◎ 규 칙

제 217 호 (교육위원회 규칙) : 서울특별시 유치원 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5

◎ 훈 령

제 537 호 : 서울특별시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심의회 규정 5

◎ 고 시

제 37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6

제 379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8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8
제 381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효 고시.....	9
제 382 호 :	두교제 10 지구재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고시.....	9

◎ 공 고

제 332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10
제 333 호 :	K S 표시점지처분해제공고.....	10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11.1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창갑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68 호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1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군별 소속지역 일람표

학군별	소 속 지 역			
	구 별	해	당	동 명
1	도봉구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쌍문동, 창동, 월계동, 도봉동, 방학동		
	성북구	전 역		
	종로구	종로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서린동, 청진동, 수송동, 중학동, 공평동, 관훈동, 전지동, 권농동, 운니동, 와룡동, 낙원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인사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팔판동, 사간동, 송현동, 가회동, 재동, 제동, 원서동, 돈의동, 묘동, 훈정동, 봉익동,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인의동, 연지동, 원남동, 효계동, 충신동, 이화동, 연건동, 동숭동, 혜화동, 숭인동, 창신동, 명륜동 1가, 2가, 3가, 4가, 삼청동		
2	동대문구	전 역		
	도봉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3	중 구	무교동, 다동, 을지로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7가, 삼각동, 수차동, 장교동, 수표동, 남대문로1가, 2가, 3가, 5가, 소공동, 북창동, 남창동, 회현동 1가, 2가, 3가, 충무로1가, 2가, 3가, 4가, 5가, 명동 1가, 2가, 남산동 1가, 2가, 3가, 저동 1가, 2가, 인현동 1가, 2가, 예관동, 북정동		

학군별	소 속 지 역		
	구 별	해	당 동 명
3	중 구		필동 1 가, 2 가, 3 가, 주자동, 남학동, 예장동, 장충동 1 가, 2 가, 쌍림동, 광희동 1 가, 2 가, 주교동, 방산동, 오장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홍인동, 황학동, 신당동, 무학동
	성 동 구	전	역
4	용 산 구	전	역
	마 포 구	전	역
5	중 구		충정 1 가, 의주 1 가, 2 가, 만리동 1 가, 2 가, 태평로 1 가, 2 가, 남대문 4 가, 서소문동, 봉래동, 순화동, 중림동, 정동
	서대문구		충정로 2 가, 3 가, 북아현동, 창천동, 대신동, 대현동, 봉원동, 미군동, 합동, 신촌동, 연희동
6	은 평 구	전	역
	중 로 구		청운동, 궁정동, 신교동, 효자동, 세종로, 창성동, 옥인동, 누상동, 누하동, 통인동, 통의동, 채부동, 적선동, 필운동, 내자동, 도업동, 당주동, 신문로, 내수동, 사직동, 무악동, 행촌동, 교북동, 송월동, 홍파동, 교남동, 평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구기동, 명창동
	서대문구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현저동, 홍제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 영천동
7	영동포구	전	역
	강 서 구	전	역
	구 로 구	전	역
8	강 남 구		양재동, 원지동, 우면동, 압구정동, 신사동, 학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서초동, 대치동, 도곡동, 역삼동, 개포동, 포이동, 잠원동,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 자곡동, 울현동, 세곡동, 일원동, 수서동, 반포동 중 행정동인 반포제 1, 2 동
	창 동 구	전	역
9	관 악 구	전	역
	동 작 구	전	역
	강 남 구		방배동, 반포동 중 행정동인 반포본동

서울특별시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1980.11.1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창감원

규 칙

◎ 교육규칙제 217 호

서울특별시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3 조 (유원장) 중 “ 300평방미터 ”
를 “ 200평방미터 ”로 “ 100평방
미터 ”를 “ 50평방미터 ”로 한다.

제 4 조 (동전) 중 “ 전조 ”를 “ 제 3
조 ”로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의 옥상유원장은 원아들
의 활동에 위험이 없도록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
행한다.

서울특별시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심
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0.11.11.

서울특별시장박영수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제 537 호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심의회규정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에 따른 입지 및 공
공용지 부담등의 사전심의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심의회 (이하 “ 심
의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에서 전달된 시장의 사전
승인 사항에 대한 심의
2. 불량주택 철거면 수용 및 서
민주택 건립등에 필요한 토지의
타당성여부 심의
3. 대상토지의 효용증진과 여전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의 필요성
및 감면사항에 관한 심의

제 3 조 (조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
인과 위원 7 인이내로 구성 한다.

(2)위원은 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공원녹지국장, 하수국장, 수도국장이 된다.

(3)심의회는 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2 항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책)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제 5 조 (심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시에 심의회를 소집한다.

(2)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심의회에 불참하게된 위원은 회의 개회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4)심의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 1과장이 되고 서기는 종합계획과장이 된다.

(2)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운영세칙) ①이 규정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7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3 호 (80.6.7)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1.11.

서울특별시감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6 m	18 m	개화동 409-4	개화동 410-1	
"	"	"	"	15	" 424-3	" 423-1	
"	"	"	"	12	" 산 72-5	" 421-12	
"	중로	1	18	18	" 442-4	" 산 77-7	
"	소로	3	6	19	" 450-4	" 450-5	
"	"	"	"	19	" 478-5	" 478-1	
"	중로	1	20	19	" 551-9	" 551-9	
"	소로	2	8	19	" 556-15	" 556-15	
"	"	3	6	15	" 560-5	" 564-1	
"	"	"	6	19	" 산 97	" 산 97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민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79 호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행허가1980.11.12.
서울특별시강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88 호 (77.8.22)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20 호 (77.8.30)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1.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구의동 59-13 외 4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동구 구의동 59-13 동부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조봉희
4. 사업시행기간 : 1980.11.-12.31.
5. 면적 : 3,666 평방미터
6.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의 소유권명세 : 별첨 (생략)
7.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8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거 서
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 의 73

지상에 민영주택(아파트 및 연립
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을 고시한
다.

1980.11.1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인정조서

사업의종류	기 업 자	사업예정지	건설규모	대지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관악구신림 동 77 의 15 삼진토 지개발(주) 임승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 의 73	아파트 56 세대, 연립 주택 6 세 대 및 부 대시설 1 식	㎡ 7,174.88	천원 1,494,421	80.10. ~ 81.6.30

나. 도로변경조서

구 분	류 번	번 호	목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 정	소로	•	8 m	125 m	상도동 210-278	상도동 214-426	
	중로	•	12 "	110 "	" 214-426	"	
변 경	소로		8 "	145 "	" 210-278	상도동 216-16	

다. 토지세목조서

위 치	지 목	필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관계인)
			주 소	성 명	
동작구 상도동 산 65 의 73	임야	7,174.88 ㎡	강서구 서초동 490 번지신동아아파트 8 동 509 호	백탁민	•

◎서울특별시고시제 331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설요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공원)
중 관악산 자연공원은 전설부고시
제 138 호(77.7.9)로 결정된 이후
저적승인 시효가 만료되었기 도시
계획법 제 14 조 및 동 시행령

제 10 조에 의거 설요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지게 한다.

1980.11.14.

서울특별시광

○설요 공원 조서

공원번호	공원종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7	자연공원	관악산공원	신림, 지촌, 사당, 봉천, 독산동	20,619,171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82 호

무교제 10 지구 재개발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623 호(78.11.25)
에 의거 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무교제 10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및 규약의 변경을 도시재
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거 인가
하고 동법 제 16 조 규정에 의거
이물 고시한다.

1980.11.

서울특별시광

가. 변경인가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사 유
○ 시행면적	1,985.8 ㎡	1,986.9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대지면적	1,497.8 ㎡	1,534.5 ㎡	시행면적 증가
공공용지	488 ㎡	452.4 ㎡	

구 분	기 정	변 경	사 유
○ 건축개요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용 도	735.78 ㎡ 11,763.36 ㎡ 지상 11, 지하 3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783.73 ㎡ 12,179.37 ㎡ 지상 11, 지하 3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사업계획변경 (80.2.12)
○ 시 행 자	동민산업 (주) 대표 손술곤	손 술 곤	건물 양도에 의한 시행 자 변경
○ 규 약	별 칙	별 칙	
○ 사업시행 계 회 서	"	"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32 호

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 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
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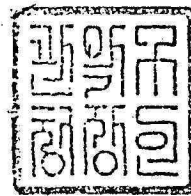
1980.11.12.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관악구청장인
관악구청장인 (호적, 병적용)
2. 사용개시일 : 1980.12.1.
3. 공인인명 : 다 음

인

영



공인명

관악구청장직인

관악구청장직인
(호적·병적용)

◎ 서울특별시 공고제 333 호

K.S 표시 정지처분 해제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7 호 (80.8.11)로 K.S 표시 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해 이를 공고한다.

제 808 호 지

보 1980.11.12 11-11

1980.11.11.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제 348 호

허가일자: 1968.8.10.

제조업체명: 한국 바이로이드 만년필
공장

대표자: 고흥명

소재지: 서울강동구천호동 374

규격번호: KSG 2610

품명: 불펜용 심

종류및 등급: 적 색

처분일자: 1980. 8.11.

해제일자: 1980.11.11.